

『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한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!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 !
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봉양순 입니다.
-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에게 민생실천위원회에서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조례 제정을 준비해온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민생실천위원회는 2018년 10월 22일, 국회에서 열린 ‘민생간담회’에서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공공연한 차별에 대한 고충을 듣고 제도적인 개선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.
- 이 후 공식적인 2번의 간담회와 30여 차례의 회의,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님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끌고자 노력했고,

-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의 협조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지지에 힘입어 11명의 민생위 의원들이 발의하고, 동료의원 33명의 찬성으로 『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』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,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- 특히 공무원의 채용, 징계, 고충 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, 공무원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여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끌고자 합니다.
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내용 ○

- 첫 째. 본 조례는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둘 째. 공무원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함(안 제4조)
- 셋 째. 공무원의 정원 조정, 채용 및 해고, 전보 결정, 고충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넷 째. 공무원의 복무의무를 정의하고 준수하도록 함 (안 제21조)
- 다섯째.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·복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(안 제29조)

존경하는 선배 · 동료 의원 여러분 !

공무직은 업무 지시·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.

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공무원의 근로환경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

-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한 민생실천위원회의 조례 제정 취지를 헤아려주시고,
- 공무원이 처한 ‘열악한 근로환경 개선’ 과 ‘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’ 를 위한 법적·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,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